

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 개선 방안 연구

- 권대연 -

2020. 11월

CONTENTS

- 01 서론
- 02 현행법 상 자체점검대장 실효성
- 03 개선 방안 제시
- 04 결론

서론

▶ 개요

개요

배경 및 목적

-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학사고 사전에 방지
-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자체점검 대장 실효성 여부 및 개선 방안 제시

화학물질 관리법 제 26조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주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 비치 하여야 한다

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26조

법 제 26조 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

별지 제 42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 대장

▶ **별지 제42호 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대장 양식**



결론

| 자체점검 대장 개선 양식 제시

▶ 별지 제42호 개선 양식 제시

감 사 합 니 다
